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0일

효문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호	김 *호 1986-02-10	울산광역시 북구 상방3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13
이 *기	이 *기 1979-03-05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13
이 *기	배 *한 1978-03-03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13

